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http://www.daedeok.go.kr

제2024-62호
2024. 10. 4.(금)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차 례

고 시(1)

•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부여 고시(고시 제2024-107호) ····· 1

공람									

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 기획홍보실(우: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☎ 608-6602)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-107호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0월 4일

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지 번 주 소	도 로 명 주 소	건물번호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 (도로명 고시일)	부여 고시일
덕암동 19-10	덕암북로72번길 38 (덕암동)	건물신축	덕암북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2024. 10. 4.
오정동 307-17	오정로75번길 78-2 (오정동)	건물신축	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2024. 10. 4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(☎ 042-608-5306)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(누리집) (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❖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 끝.